

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(제75조의3제2항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

나. 등광색은 적색일 것

다. 설치위치

1) 높이 방향

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2) 뒷면안개등과 제동등 각각의 발광면 간 간격은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

라. 관측각도

1)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,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2) 뒷면안개등이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25도 이하의 모든 범위에서 관측될 것. 다만,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25도,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 관측되어야 한다.

마. 조사 방향

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

바. 작동조건

1) 주행빔 전조등, 변환빔 전조등, 앞면안개등 중 하나 이상이 점등된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이 점등될 것

2) 앞면안개등과 독립적으로 소등될 것

3) 차폭등,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소등이 지속될 것

4) 표시장치

뒷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

2. 광도는 별표 6의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